

2007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정책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6일 2007년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사회복지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새로운 정책을 소개한다.

정책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26
기초생활보장제도 외국인 특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적취득전인 외국인 배우자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부여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_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 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 _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 규정 	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26
희망스타트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 및 0 -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아동안전권리팀 031-440-9656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부양수당 수급자 등급판정 심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중증 장애인(1~2급)으로 진단 받은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심사를 거쳐 중증 장애인(1~2급)으로 등록 	장애인정책팀 02-2110-6266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계층 등록 장애인까지 확대 지급액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수당 : 기초중증 13만원, 차상위 중증 12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3만원 - 장애아동부양수당 : 기초중증 20만원, 차상위 중증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0만원 	장애인소득보장팀 02-2110-6279
보건복지 관련 상담전화의 통합·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운영 ※ 1391, 1389, 1377, 1688-1004, 1588-0678 상담전화는 '07. 1. 1.부터 없어 지고 전화할 경우 "결번"으로 안내됨. 다만, 아동학대(1577-1391), 노인학대 (1577-1389), 푸드뱅크(1688-1377) 상담전화는 129와 함께 이용 가능 	보건복지콜 센터 031-389-7311 또는 전국어디서나 129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민층 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의 약 50% 지원 - 실비노인요양시설 : 월 220천 원 - 실비전문요양시설 : 월 300천 원 	노인요양운영팀 031-440-9630~4
노인돌보미 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민층 노인에게 월 2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가능토록 함 - 제공 서비스 :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노인요양운영팀 031-440-9630~4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지원센터를 신규 설치 - 제공 서비스 :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주간·단기보호서비스 	노인요양운영팀 031-440-9630~4

희망스타트사업 실시

아동에 대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희망스타트 사업을 새로 실시한다.

희망스타트사업은 취약지역의 임산부 및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복지·교육(보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선, 내년도에는 전국 16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한다.

주요서비스 내용으로는 임산부 및 아동을 대상으로 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보건서비스 실시와 부모교육 및 직업훈련·고용촉진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자립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보육(교육)기관 등과 협업 또는, 보완적인 돌봄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서민층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비노인(전문)요양 시설 이용료를 지원한다.

서민층 노인이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월 437~706천 원) 부담으로 인하여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였다. 이에 서민층 노인을 대상으로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의 약 50%를 지원하여 복지서비스 혜택을 확대하고, 노인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낮아지도록 하였다.

- 1인당 지원액 : 월 22만 원(실비요양시설), 월 30만 원(실비전문요양시설)

노인돌보미 제도 시행

재가 서민층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인돌보

미 제도를 시행한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비해 서민층 노인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였다. 이에 재가 서민층 노인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여 가정봉사원과 견선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정봉사원과견선서비스 : 신체수발(목욕·식사도움·세면도움 등), 일상생활(취사·청소·세탁 등)
- 주간보호서비스 : 급식, 목욕, 여가생활서비스(취미, 오락, 운동 등)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 지원

가정봉사원과견선서비스, 주간·단기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지원센터를 설치한다.

2006년에 농어촌 지역에 종합재가지원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2007년에는 도시지역으로 설치를 확대하였다.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그동안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농어촌 및 도시 지역의 재가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 혜택이 확대되고,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종합재가지원센터 :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가정봉사원이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 동안 또는 단기간(45일 범위) 동안 보호하는 등의 서비스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SW